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김태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69

발의년월일 : 2017년 11월 13일

발 의 자 : 김태수·김상훈 의원(2명)

찬 성 자 : 최관술·장우윤·서영진·박진형·
황준환·우형찬·김제리·유광상·
김동율 의원(9명)

1. 제안이유

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로 핵가족화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현재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 접어들었고 반려동물 수가 500만 마리에 이르고 있음.

나. 그러나, 일부 반려동물 소유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이 부족하여 학대나 유기(1일 평균 260마리)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또한 미흡한 실정임.

다.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 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시민들의 동물생명존중과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를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 나.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규정함
(안 제6조).
- 다. 반려동물 실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반려동물 보호실현을 위해 자치구,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구축을 규정함(안 제8조).
- 마.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장려를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서울특별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토끼 등의 동물을 말한다.
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동물매개활동”이란 사람과 동물의 상호 활동을 통해 사람들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서울특별시의 반려동물 보호시책에 적극 협조 등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민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정서적 불안 등과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여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 감독·지도에 관한 사항

5. 반려동물 문화제 개최 등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6. 반려동물과의 공존문화 확산을 위한 동물매개활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실현을 위해 자치구, 대학·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및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매개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① 시장은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